

#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요약 상품설명서

[기본정보]

(2025.01.02 기준, 세전)

구분	내용			
상품특징	병역의무 복무자의 전역 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목돈마련 비과세적금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b>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b>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병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장병 ※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한 장병			
계약기간	1개월 ~ 24개월 (일단위) -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가능)			
적립한도	월 10만원 ~ 30만원 (원단위) ※판매금융기관 합산 월 최대 55만원 한도 내			
적용금리	기간	1개월~12개월미만	12개월~15개월미만	15개월~24개월이하
	금리	최저 연3.50% ~ 최고 연6.50%	최저 연4.00% ~ 최고 연7.00%	최저 연5.00% ~ 최고 연8.00%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 우대금리 적용				
1% 이자지원금 매칭지원금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 ※ <b>지원금 확인서원본제출필수</b> [①전역증 ②병역증 ③병적증명서 ④복무사실 확인서(복무증 대체복무요원만가능) 中 택1] (비대면 해지시 자격검증서비스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를 제출) ※ 단, 1%이자지원금은 '23.12.31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			
세제혜택	○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가능		
예금담보대출	○	납입액의 100%까지 가능		
예금자보호	○	원금과 이자포함 5천만원까지 가능		

## [유의사항]

※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1599-1111,0,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도해지금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x 경과율**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단위 : 연,%)	
* 차등율 : 경과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2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4 ※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당시 정기적금 6개월제 기본금리 기준 적용	
예금해지	영업점 및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을 통해 해지 가능	

※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시 불필요한계좌를 정리할 수 있으며, 휴면계좌통합조회서비스이용시 휴면계좌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설명서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는 경우(예시:유선 가입시는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등),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품명 :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 상품특징 : 병역의무 복무자의 전역 후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목돈마련 비교세적금

## 2 거래 조건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증서)이나 계약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5.01.02 기준, 세전)

구분	내용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으로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b>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b> ① 1인 1계좌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불가) ② 가입일로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장병 ③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을 제출한 장병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 <sup>(주1)</sup> 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한 장병 <small>(주1) 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ID (결제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증명서를 발급·검증·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자격검증정보', '자격검증확인' 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small>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가입금액	30만원 이하 (원단위, 0원 신규 가능)	
거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신규: 영업점, 스마트폰뱅킹</li><li>해지: 영업점, 스마트폰뱅킹</li></ul> ※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거래는 <b>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b> <b>제한</b>	적립한도	월 10원 ~ 30만원 (원단위) ※판매금융기관 합산월 최대 55만원 한도내	
계약기간	1개월 ~ 24개월 (일단위) - 만기일은 전역(또는 소집해제)예정일과 일치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24개월 초과시 최대 24개월까지 가입 가능)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			
기본금리	계약기간	1개월 ~ 12개월미만	12개월 ~ 15개월미만	15개월 ~ 24개월이하
	기본금리	연 3.50%	연 4.00%	연 5.00%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기본금리 적용				
우대금리 (최고 연 3.00%)	우대 항목	내용		
	주택청약 종합저축 (연 0.50%)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기준으로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보유한 경우 (예시) '24.01.14 적금 신규시 '24.04.30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는 경우 우대금리 제공		
	군급여이체 또는 카드결제 (연 0.7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까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회 이상 군급여 입금실적을 보유하거나, 하나카드 (체크/신용) 결제 실적이 3회 이상 있을 경우 (※ 군급여이체 및 카드결제실적은 월 1회만 인정하며, 군급여이체 실적은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군인중앙공제이체에 한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연 1.80%)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일까지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 본인 명의 '수급자 증명서' 또는 '사회보장  
급여 중지 통지서(중지사유: 군입대)

중도해지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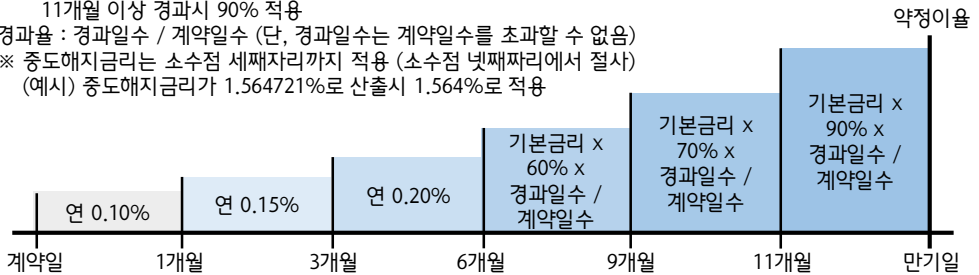
입금 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의 합계(원미만 절사)

기간	중도해지금리
1개월 미만	연 0.10%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연 0.15%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연 0.20%
6개월 이상	가입 당시 해당 상품의 기본금리 x 차등율* x 경과율** (단, 연 0.20% 미만 시 연 0.20% 적용)(단위 : 연,%)

\* 차등율 : 경과기간(6개월이상)에 따른 아래 차등율 참고  
-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경과시 60% 적용, 9개월 이상 ~ 11개월 미만 경과시 70% 적용,  
11개월 이상 경과시 90%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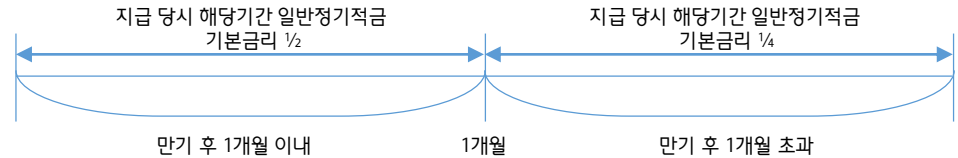
\*\* 경과율 : 경과일수 / 계약일수 (단, 경과일수는 계약일수를 초과할 수 없음)

※ 중도해지금리는 소수점 세째자리까지 적용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  
(예시) 중도해지금리가 1.564721%로 산출시 1.564%로 적용



만기 후 금리

1개월 이내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2  
1개월 초과 : 지급 당시 해당기간별 일반정기적금 기본금리의 1/4  
※ 단,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급당시 정기적금 6개월제 기본금리 기준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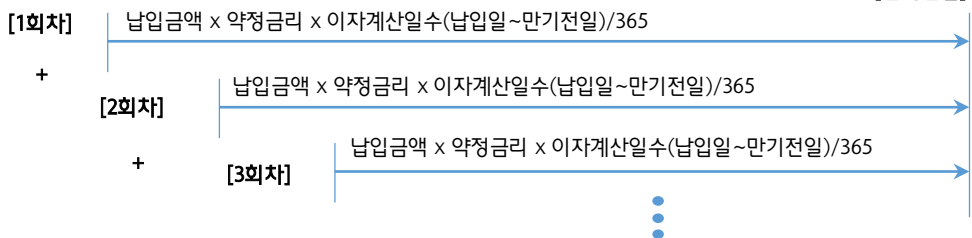


일부해지

불가

이자계산방법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복합**하여 지급



만기앞당김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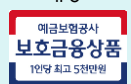
자유적립식 예금으로 만기앞당김 지급이 불가합니다.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부해지 포함)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 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이 불가합니다.

양도 및  
담보제공

- 공동명의 가입 및 양도 불가
- 은행의 승낙을 받은 경우 질권설정이 가능하며, 예금담보대출은 예금잔액 범위내에서 가능

<p><b>세제혜택</b></p>	<p><b>비과세 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b></p> <p>①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추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② 단,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이 예금 가입이 불가하고 기가입자의 경우 비과세 소득에 대하여 추정 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로 전환 및 납입이 불가합니다.</p> <p>③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p> <p>④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p> <p>⑤ <b>비과세저축 한도변경 불가합니다.</b> (단,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1회에 한하여 비과세저축 한도 변경 가능하며, '25.1.1까지의 비과세저축 한도변경 이력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p> <p>⑥ <b>비과세저축 한도는 5만원 단위로 설정 가능합니다.</b> (단, '25.1.1까지 가입한 계좌는 기존에 설정한 비과세저축 한도 유지 가능)</p>
<p><b>자동이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립한도 이내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하며, 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군급여공제가 가능합니다.</li> <li>자동이체는 다른 금융회사 계좌에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자동이체를 말일로 지정할 경우, 신청 은행의 자동이체 정책에 따라 익영업일에 입금될 수 있으며, 월 저축 제한이 있는 상품의 경우 익월 한도에서 차감됩니다)</li> </ul>
<p><b>계약해지방법</b></p>	<p><b>영업점 및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을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b></p> <p>※단, 비대면을 통한 해지는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만 가능하며, 조기전역, 복무변경(현역,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신분전환(병↔간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p> <p>① 만기일 이후 해지</p> <p>② 자격검증서비스(주1) 로 검증된 <b>「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b>를 제출</p> <p>③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보유</p>
<p><b>예금 해지 시 불이익</b></p>	<p>만기 전 예금해지시 계약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p>
<p><b>통장발행</b></p>	<p>통장 미발행 가능합니다.</p>
<p><b>연계·제휴서비스</b></p>	<p>해당사항없음</p>
<p><b>휴면예금 및 출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금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휴면예금은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li> <li>휴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li> </ul>
<p><b>위법계약해지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li> </ul>
<p><b>자료열람요구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구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li> </ul> </li> <li>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li> </ul>
<p><b>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b></p>	<p>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영업점, 고객센터(1599-1111,0,1), 고객의소리(080-933-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p>
<p><b>예금자보호여부</b></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p>  </div> <div> <p>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p> </div> </div>

**3 1% 이자지원금**

구 분	내 용
1% 이자지원금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만기해지시 정부예산으로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입니다.
지급대상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① 만기일 이후 해지(단, '21.10.14 이후 만기도래하는 계좌에 한함) ② <b>지원금 확인서 원본 제출 필수</b> [ <b>㉔전역증 ㉕병역증 ㉖병적증명서 ㉗복무사실 확인서(복무증 대체복무요원만 가능) 中 택]</b> (단, 비대면 해지시 자격검증서비스 <sup>(주1)</sup> 로 검증된 <b>「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b> 를 제출)
지급금액	가입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납입금액 건별로 실제 예치일수 동안 연 1%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단, 1%이자지원금은 '23.12.31까지 입금분에 한해서만 적용)
알아두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이자지원금 시행일은 2021년 10월 14일이며, 시행일 이후 <b>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b>됩니다.</li> <li><b>확인서 미제출로 1% 이차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b></li> <li>『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1%이자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li> <li>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li> </ul>

#### 4 매칭지원금 (사회복귀준비금)

구 분	내 용
매칭지원금	이 예금 가입자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저축장려금입니다.
지급대상	1% 이차지원금 지급대상 및 조건과 동일합니다.
지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24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b></li> <li><b>['23년 납입한 원금 + 이차소득 + 1% 이차지원금] 합산금액의 71%</b></li> <li><b>['22년 납입한 원금 + 이차소득 + 1% 이차지원금] 합산금액의 33%</b></li> </ul>
지급시기 및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칭지원금은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차와 달리, 만기 해지시 은행에 제출한 입금 희망 계좌(본인명의 당행 입출금통장)으로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li> <li>만기 해지후 입금까지 최대 3개월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입금시까지 거래정지(압류 등), 계좌해지 등의 처리 불가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li> <li>입금일정 등 관련 상세내용은 국군재정관리단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알아두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칭지원금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후 <b>만기해지한 계좌에 한하여 적용</b>됩니다.</li> <li><b>확인서 미제출로 매칭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 추후 이를 은행에 재청구할 수 없습니다.</b></li> <li>『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매칭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li> <li>국가 정책 및 관련 법률등의 변경에 따라 <b>시기별로 지원금액이 상이</b>할 수 있으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변경내용은 국방부 나라사랑포털 및 병역법 시행령 또는 하나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li> </ul>

#### 5 유의사항

- 이 예금의 신규 가입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신규시 자격검증서비스<sup>(주1)</sup>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한 장병만 가입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영업점 및 스마트폰뱅킹(하나원큐)을 통해 해지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을 통한 해지는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만 가능하며, 조기전역, 복무변경(현역,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신분전환(병↔간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영업점에서만 해지 가능.  
① 만기일 이후 해지 ② 자격검증서비스<sup>(주1)</sup>로 검증된 **「장병내일준비적금 전역 확인서」**를 제출  
③ 하나은행 입출금통장보유  
<sup>(주1)</sup> 자격검증서비스 : 유무선 인터넷 웹사이트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본인의 금융분산ID (결제원과 각 은행이 기 구축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증명서를 발급·검증·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자격검증정보', '자격검증확인' 등을 거치는 일체의 서비스
- 중도해지시 약정한 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며, 비과세 및 1% 이차지원금과 매칭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1% 이차지원금 및 매칭지원금 관련 내용은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적금 해지시 은행이 지급하는 이차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지원금 관련 문의는 국군재정관리단(02-3146-6544,6545) 및 병무청 (042-481-3043,사회복무요원 限)으로 문의**바랍니다.
- 이 예금은 '하나은행'과 '국방부(병무청)' 간 업무협약에 의해 운영되는 상품으로 향후 업무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을 만기해지한 고객은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이 예금의 우대금리 제공을 위한 최소 유지기간보다 적금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 우대금리가 미적용됩니다.

이 예금은 하나은행 리테일상품부에서 개발한 금융상품입니다. 상품문의는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 (1599-1111,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